

별첨1

2023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100점	
①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- 제조업 끼임·추락 고위험 3대업종(중업종 기준)* 등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지원사업장 * ❶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❷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, ❸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- 일선기관별 용자금 지원사업 연계율 등을 고려한 재해율 상위 10개 업종(소업종 기준) ❶벌목업, ❷쇄석채취업 ❸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, ❹전기계측기제조업, ❺강선건조또는수리업 ❻택배업 ❼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❽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 ❾양식어업, ❿기타섬유제품제조업	20점	재해율 통계: 지역별 300인 미만(확정통계 사용)
② 시설 및 장비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 -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-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	20점	
③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사업 참여 사업장 [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, 위험성평가 인정] * '23년 기술지도 사업장	20점	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동안 용자금 신청 시 점수 부여
④ 「법 제80조, 제84조, 제89조 및 영 제70조, 제74조, 제77조」 또는 「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」에 따라 유해·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·기구(영 별표20) 또는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	15점	
⑤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	5점	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⑥ 고용증가 사업장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	5점	
⑦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(해당 근로자 1명당 1점, 최대 5명 인정)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5점	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❶노사문화 우수(대상)기업, ❷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❸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, ❹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❺청년친화강소기업 -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5점 적용(중복해당 시 합산하지 않음)	5점	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⑨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지원 업체 '22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포함	5점	
계	100점	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(가점)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	(가점) 20점	• 일선기관별 필요 시 수립
①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	20점 (중복 불가)	• 산재통계 기준(공단전산확인)
② 전년도 패트롤점검 수행 사업장		• 공단전산확인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→ 자율 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지원결정 불가(단,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사업장 제외)

※ '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·결정 불가